

[별표 3] <개정 2020. 5. 11.>

**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등 (제14조 관련)**

**[ 홍천군 청소년수련원 ]**

구 분	사용기간	사 용 료(원)		비 고
		청소년	일반	
숙박비	1박 기준	7,000	10,000	
식 비	1식 기준	5,000	6,000	
수강료	프로그램 1회당	2,000	5,000	재료비 별도
운동장	4시간	무료	30,000	
강 당	09:00~13:00	무료	40,000	초과이용 시 1시간당 1만원 추가 징수
	13:00~17:00	무료	40,000	
	17:00~22:00	무료	40,000	

**[ 유의사항 ]**

1. 숙박은 당일 12:00부터 다음날 12:00까지로 한다.
2. 식비는 수련원 식당을 이용했을 때를 말한다.
3. 이용객의 식사는 시설 내 별도의 문제가 없을 시 시설을 이용한다.
4. 수강료는 수련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를 말한다.
5. 강당
  -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
6. 사용료 등 요금의 감면·면제·반환에 대하여는 동 조례 15조, 16조를 따른다.
7. 15인 이상의 인원에 한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.
8. 운동장 및 강당의 경우 일반인(25세 이상)의 인원이 60%를 초과하면 일반 사용료를 부과한다.